

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

의안 번호	4345
----------	------

2025. 10. 17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발의일·발의자: 2025. 9. 30.(화) 서영배(옥곡) 의원

나. 회부일: 2025. 9. 30.(화)

다. 상정일: 2025. 10. 16.(목)

-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“수정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취지

- 광양시의 농어업을 보전·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4조)
- 자격요건 및 선발,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6조)
- 지원 및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- 사후관리 및 홍보, 준용,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2조)

3.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 승계를 유도하고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와는 별도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자격요건(1년 vs 5년) 설정의 적정성 여부, 예산 부담 규모, 효율적 사후관리 제도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

5. 심사 결과: 수정의결(출석위원 7명)

6. 기타 사항

- 해당 없음.

- 붙임 1. 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

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345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10. 17.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1. 수정 이유

- 조례안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자구 일부수정

2. 수정 내용

- 안 제3조의 제목 “(시장의 책무)” 를 “(시장등의 책무)”로 하고
제5조제1호 중 “1년” 을 “2년”으로 하며
제7조제2호 중 “운영자금” 을 “운영자금 일부지원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3호 중 “비용” 을 “비용 일부지원”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

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의 제목 “(시장의 책무)” 를 “(시장등의 책무)”로 하고
제5조제1호 중 “1년” 을 “2년”으로 하며
제7조제2호 중 “운영자금” 을 “운영자금 일부지원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3호 중 “비용” 을 “비용 일부지원”으로 수정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	제3조(시장등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자격요건 및 선발)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.	제5조(자격요건 및 선발) ----- ----- -----
1.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만 50세 미만인 사람	1. ----- 2년 ----- ---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지원)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광양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·유통·가공·수출 관련 창업 및 <u>운영자금</u>	2. ----- ----- <u>운영자금 일부지원</u>
3. 농지, 농기계, 축사, 어선,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<u>비용</u>	3. ----- ----- <u>비용 일부지원</u>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
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의 농어업을 보전·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가업승계농어업인"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.
2. "농어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농업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.
3. "농어촌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~~시장의 책무~~) (시장등의 책무) ① 광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광양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·지원계획

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방향 및 목표
2. 자격 및 선발·교육 등 육성방안
3.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
4.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자격요건 및 선발)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1.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~~1년~~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만 50세 미만인 사람
2.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위원회의 심의 등)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·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「광양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를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)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광양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

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
2.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·유통·가공·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일부지원
3. 농지, 농기계, 축사, 어선,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지원
4.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, 농어촌체험 등
5.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지원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,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

1.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2.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·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
4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사후관리)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

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고,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홍보)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·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